

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

재무부에서는 그동안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형태가 변화함에따라 이러한 성향에 맞추어 전기·전열·가스이용기구중 진공소제기, 제빙기, 커피분쇄기 및 아이스크림제조기의 비과세 규격기준을 상향조정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편집자

(재무부령 제 1953호)

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8조 ①(삭제)

②영 별표1 제2조제6호 본문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의것”이라함은 전기·전열·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(가정형의 것에 한한다)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현행과 같음
2. 진공소제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
3. 제빙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.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
4. 커피분쇄기로서 사용동력이 1.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
5.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이상의 것
6. 현행과 같음
- ③, ④현행과 같음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.

②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**전안**